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치의무사업자의 수사기관에의 불법촬영물 신고의무 부과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14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 후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부과	2
2.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4.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Ⅲ. 검토의견

1.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 후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부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u>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후단 신설></u> 1. ~ 3. (생략) <u><신설></u> <u>② ~ ④</u> (생략) <u>⑤</u>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u>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u>⑥</u> 누구든지 <u>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u>	----- ----- -----<u>정보에 대한 접근을</u> <u>임시적으로 차단(이하 “임시조치”라 한다)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u>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⑥</u> ----- -----<u>제2항</u>-----<u>제3항</u>----- ----- ----- ----- ----- ----- ----- <u>⑦</u> ----- <u>제5항</u>-----

현행	개정안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불법 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²⁾의 요청 등을 통하여’ 조치의무사업자³⁾가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3)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칭함(「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인식한 경우이어야 함.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조치의무사업자가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초기에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유통방지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조치의무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고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재의 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4)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기

4)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협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방통위가 제공하는 필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되고 있어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정보를 오래 남기거나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신고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수사절차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⁵⁾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불법촬영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야 한다.

- 방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요청 정보는 해당 기관·단체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을 임시조치 기간인 30일동안 불법촬영물을 보관하는 것은 외부 해킹 또는 정보유출 등의 위협으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히 채증하고 그 완료를 통보하면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해관계기관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임시조치 및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고,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2.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인정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5항2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5제3항-----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5항----- ----- -----
1의3. ~ 3. (생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⑤ -----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1.·2.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u>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u>	<u>2의3. -----제22조의5제6항-----</u> ----- ----- -----
<u>2의3.·2의4. (생략)</u>	<u>2의4.·2의5. (현행 제2호의3 및 제2호의4와 같음)</u>
3. ~ 17. (생략) ⑥ (생략)	3.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조치의무사업자 신고의 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사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신고시 처벌 규정을 둔다면 사업자의 판단 여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회피를 위해 임시조치 및 수사기관 신고 남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